

기 관 명

직인

제 목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결정·경정 내용 통보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성 방법

- ☐ ① 관리번호: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☐ 인적사항(납세의무자 기본사항)란
 - ③ 주민등록번호: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 - ④ 연락처: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
 - ⑤ 현주소(신고 당시 주소):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.
- ☐ ⑦ 신고 구분: 확정신고, 예정신고, 수정신고, 기한후신고, 결정,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- ☐ ⑧ 귀속연도: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.
- ☐ ⑨ 거주구분, ⑩ 내외국인: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거주구분, 내외국인여부를 기재합니다.
- ☐ ⑪ 세무서(담당자):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.
- ☐ ⑫ 당초 납부기한: ⑬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, ⑭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.
- ☐ ⑬ 최종 납부기한: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.
- ☐ ⑭ 송달불능 사유, ⑮ 공시송달일: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.
- ☐ ⑯ 구분: "당초"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, "수정"은 수정신고·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.
- ☐ 양도자산 내역란
 - ⑰ 양도일: 양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일을 기재합니다.
 - ⑱ 양도자산 종류: 토지, 건물, 회원권, 주식, 분양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 - ⑲ 양도물건 및 소재지: 양도자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를 기재하고, 회원권 등은 양도대상 물건 내용을 기재합니다.
- ☐ ⑳ 신고·결정·경정일: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, 결정,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.
 - ㉑ 결정·경정사유 :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결정·결정한 사유를 기재합니다.
 - ㉒ 발행연월: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,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.
 - ㉓ 발행번호: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,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☐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
 - ㉔ 원천징수세액공제: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.
 - ㉕ 가산세계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4호서식의 신고불성실·납부지연·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 - ㉖ 본세: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.
 - ㉗ 무신고 등 가산세: 해당 가산세 중 ㉘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, 신고불성실·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- ☐ 환급금 신고계좌란
 - ㉙ 은행코드: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.
 - ㉚ 계좌번호: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.